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0나91624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0나9162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단52300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재명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일

변론종결 2022. 3. 22.

판결선고 2022. 5. 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단523003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 사이에 2019. 5.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A에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5. 9. 접수 제17378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2019. 5. 1. 접수 제165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은 Q 구리점의 운영자로서 2018. 9. 4. 원고와의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3. 9. 4.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D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에 대하여 R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하거나 D이 원고에게 신용보증부실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가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A에게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그에 대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A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9. 9. 24. D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40,539,9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A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5.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16501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가 2019. 5. 9.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 말소되었다. 그 후 2019. 6. 26.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23575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9. 5. 1. 당시 A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강릉시 H 답 3,359㎡ 중 1,259/3,359 지분과 I 답 2,532㎡ 중 1,032/2,53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강릉시 S 도시형생활주택 T호의 입주권을 매수하여 계약금 13,440,000원을 납부한 상태였으며,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04,000,000원, 근저당권자 G회사)의 피담보채무와 D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부 대출금채무 4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2019. 7. 30. A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단34233호로, 피고가 A에게 26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A이 피고 몰래 법무사와 공모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위조행사하여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이 위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19. 11. 12. 변론 없이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9. 1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9. 8. 7.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카단20423호로 2근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2019. 8. 8. 위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20. 9. 14. 위 가처분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2020. 9. 22.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위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위 마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집행하지 않고 있던 중인 2020. 1. 21. 근저당권자 G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U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인천 계양구청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자인 A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해 주었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제1심법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원상회복 청구는 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원고가 2021. 7. 26.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9. 5. 1.경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로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9. 24. 원고가 A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D에게 A의 대출원리금 합계 40,539,944원을 대위변제하여 실제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며, 위 대위변제 시점에 비추어 보면 2019. 5. 1.경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A이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강릉시 H 답 3,359㎡ 중 1,259/3,359 지분과 I 답 2,532㎡ 중 1,032/2,532 지분, S 도시형생활주택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편 G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부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법원의 G회사 및 F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8. 4. 18. 기준 감정평가액이 합계 600,965,400원이고, A이 2019. 5. 1. 기준으로 부담하는 G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금액이 합계 421,444,456원[=(일반자금대출 원금 236,000,000원+2019. 5. 1. 기준 이자 및 지연이자 합계 787,843원)+(슈퍼모기지론대출 원금 184,000,000원+2019. 5. 1. 기준 이자 및 지연이자 합계 656,613원)]인 사실, 위 H 답 3,359㎡와 I 답 2,532㎡의 2018. 12.경 감정평가액이 합계 501,835,000원이고, 위 두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J으로 된 F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2019. 5. 1. 현재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금액이 350,000,000원인 사실[이에 따라 위 H 토지와 I 토지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151,835,000원(=501,835,000원-350,000,000원)을 위 두 토지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될 담보가치 합계액으로 보고, 위 금액을 위 두 토지의 등기상 거래가격 비율(H 토지:I 토지=3:2)에 따라 나누어 A이 소유한 공유지분의 담보가치를 산정하면 위 H 토지 중 공유지분 가액은 34,145,924원(=151,835,000원×3/5×1,259/3,35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I 토지 중 공유지분 가액은 24,754,142원(=151,835,000원×2/5×1,032/2,532)으로 산정된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이 소유한 적극재산의 가액은 합계 673,305,466원(=이 사건 각 부동산 600,965,400원+위 H 토지의 담보가치 34,145,924원+I 토지의 담보가치 24,754,142원+S 입주권 계약금 13,440,000원)이고 소극재산의 가액은 적어도 합계 461,444,456원(=G회사에 대한 채무 421,444,456원+D에 대한 채무 40,000,000원,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2019. 5. 9. 유한회사 V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W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9. 6. 27. 취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9. 5. 1. 당시 위에서 인정한 소극재산 외에도 집행권원이 있는 채무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이었는데, A이 피고에게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A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A의 소극재산(461,444,456원)이 적극재산(673,305,466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 423,305,466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당사 증인 X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7. 12.경 A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해 준 것을 시작으로 A, X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한 채권자로, 어느 시점부터 A과 X로부터 이자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한 끝에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A의 채권채무관계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A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나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A, X, 법무사 Y을 위 1의 마항 기재 근저당권 해지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하여 X가 불구속 기소되고, 불기소처분된 A과 Y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고 및 재정신청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형사고소에 관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A의 채권채무관계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당사 증인 X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A, X가 2017. 12.경 각각 200,000,000원씩 총 600,000,000원을 투자하여 함께 Q 구리점을 동업한 사실, 위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피고가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A의 채권채무관계나 자금상황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따라서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아, 판사 조성필, 판사 이관형

별지